

창원지방법원 2021. 1. 20 선고 2019가단12199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21. 12. 9 선고 2021나51864 판결

창원지방법원 2021. 1. 20 선고 2019가단121998 판결

전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훈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진욱

변론 종결 2020. 12. 16

판결 선고 2021. 1. 20

주문

1.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, 2토지 지상 비닐하우스 4개동에 관하여 2019. 4. 25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위 1항. 기재 비닐하우스 4개동을 인도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7. 7. 초경 소외 C과 별지 목록 기재 1, 2토지 지상 비닐하우스 4개 동(이하 '이 사건 비닐하우스'라 한다)을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7. 8.경 이를 완공하여 위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는 그 채권자이고, 피고는 위 C으로부터 2019. 4. 25.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매수하여 취득한 사람이다.

나. 원고가 위 C을 상대로 제소한 이 법원 2017가단12595호 공사대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은 93,186,000원 및 이에 대한 2017. 9. 29.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.

다. 위 C은 2017년도 이 사건 공사 착공이후 은행 신용등급이 미달되어 대출을 받 지 못하여 원고에 대한 공사금도 지급못하는 등 거의 무자력의 신용상황에서 이 사건비닐하우스 완공이후 이를 인도받았음에도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다가 2019. 4. 25. 피고에게 이 사건비닐 하우스 전부를 매매 대금105,000,000원에 매도하고,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조로 먼저 계약금 10,000,000원을 수령하고,중도금40,000,000원 중 미납중인 비닐대금 약 7,168,236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32,831,764원은 계좌이체형식으로 받아 이체 받은 날 출금하고, 잔금55,000,000원도밀린 공과금 명목의 돈을 뺀 나머지 53,635,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5.

2. 수령하였다.

그러나 원고에 대한 공사금채무는 여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.

라.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매매당시 시설물 일체 포함한 시중거래가격 감정결과는 108,216,120원 상당이다.

[증거] 갑1~7, 14(각 가지번호 포함), 을1~4의 각 기재, D조합에 대한 금융제출명령결과, 시가감정인 E의 감정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살피건대,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 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그로 인하여 일응 추정된다.

따라서 C와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은 C를 확정적으로 무자력 상태로 만들어 원고 등 채권자의 자산을 침해한 사해행위가 되므로, 악의가 추정되는 수익자인 피고는 C과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로서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쟁한다.

살피건대,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4다220132판결 등)이 사건의 경우에 돌아와 보건대, 위 인정의 갑3호증, 을3, 4,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C은 원고와 공사대금사건에서도 다투면서 하자를 언급하는 등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아니한 상태로 이 건 비닐하우스를 매도하려고 온라인에 게시하였고 피고도 온라인 매매목적물 게재내용을 보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매매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, 실제로 피고는 남편의 사망 직후 연금 등을 수령한 돈 등을 받는 통장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를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, 매입이후 농지로 사용하는 사정 등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피고와 자녀들의 생계수단을 위하여 매입한 점, 무엇보다도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매매대금의 책정금액과

실제 그 시가와 큰 차이가 없으며 피고의 그 매매대금 지급과정으로 보여준 자금이체 흐름에 소소한 금액을 밀린 공과금등을 공제하는 외 달리 어떤 의혹은 없어 보이는 사정 등이 있는바,이러한 사정들을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피고는 C의 비닐하우스 운영상황을 보고 매매하려고하였을 뿐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미이행, 채무 초과사실 등을 다 알고서 저가에 이를매수하려고 하였던 악의의 수익자라 할 수는 없다.

따라서 피고는 선의로 인정되어 앞서의 악의 추정은 번복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 한다.

판사 예지희

별지